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운영사항 안내

1. 관련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혁신행정담당관-2296호, '20.8.21),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223호, '20.8.24)
2. 우리 부는 코로나19 관련 규제완화로 기 통보(보육정책과-6552호, '21.12.6.)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운영 방침을 중지하고, **금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부터 비대면 교육 및 실습을 대면으로 전환함을** 알려드립니다(확진자 제외).
3. 이에, 교육부(관련 과)에서는 대학 등 학사정책 운영에 참고하시고, 관련 기관(산하기관 포함) 및 단체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운영 대학 등에 안내하여 '22학년도 2학기 양성교육 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적용 내용
대체수단 인정기간	코로나19 상황 고려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적용
대면교과목	○ 대면교육 실시 ○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시험 실시 인정 ※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보육실습	○ 6주 직접실습(2회 이상 분할 실습 가능) ○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분할실습으로 직접실습 수행 ※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기타사항	○ 교육과정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이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운영 방안, 코로나 관련 증빙 자료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확인·점검,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4. 또한, 코로나19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6월부터**, 보수교육(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제외)이 **대면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 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5월부터 신청한 보수교육에 한하여 대면교육으로 전환하며, 5월 이전에 신청하여 6월부터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기존대로 온라인 수업 가능
- 보수교육 기간과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보수교육기관에서는 동시적 원격수업·시험 등 자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교육시간의 최대 10%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장),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보육진흥원장,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서울특별시(보육담당관), 부산광역시(출산보육과장), 대구광역시(출산보육과장), 광주광역시(출산보육과장), 대전광역시(가족돌봄과장), 울산광역시(복지인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가족과장), 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경상북도지사(아이세상지원과장), 경상남도지사(가족지원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천광역시(영유아정책과장)

주무관 강지영 서기관 최기전 보육정책과장 전결 2022. 4. 29. 유보영

협조자

시행 보육정책과-2255 (2022. 4. 29.)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13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553 팩스번호 044-202-3973 / crush237@korea.kr / 대국민 공개